

기금운용심의회 규정

2018. 11. 21. 제정

2019. 5. 8. 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
3.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9.5.8.)

② 심의회는 총장, 기획처장, 학교법인 이화학당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회계 또는 재무 관련 교내 및 교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단, 교외 전문가는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14조의5제4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. (개정 2019.5.8.)

③ (삭제 2019.5.8.)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9.5.8.)

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서기와 실무를 담당할 자금팀장 및 자금팀 담당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. (개정 2019.5.8.)

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총장이 궐위 상태이거나 위원장직 수행이 부득이 불가능한 경우, 위원 중 직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5조(간사)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자금팀장으로 한다. (개정 2019.5.8.)

② 간사는 심의회의 실무를 관장한다.

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 학년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록)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5.8.)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서면결의)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9조(관계자의 회의 출석 등)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비밀유지 의무) 위원은 심의회 활동 중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5.8.)

제11조(실무위원회) ①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하고 심의회 승인을 받은 자금 운용지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19.5.8.)

② 실무위원회는 기획처장, 관리처장, 자금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의 전공교수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 4인 이내의 전문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 (개정 2019.5.8.)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9.5.8.)

④ 회의는 위원장이 매 학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5.8.)

⑤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(개정 2019.5.8.)

제12조(경비 등의 집행)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. (개정 2019.5.8.)

제13조(사무관장)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는 자금팀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19.5.8.)

제14조(운영세칙)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(2018. 11. 21. 제정)

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5. 8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